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

보도	2023.6.8.(목) 조간	배포	2023.6.7.(수)
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	책임자	팀 장	박수홍	(02-3145-7471)
		담당자	선 임	김종현	(02-3145-7472)
	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부문	책임자	부문장	임주혁	(02-368-4276)
		담당자	팀 장	공진규	(02-368-4094)

고가(高價)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(低價)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「자동차보험 할증체계」를 개선합니다.

주요 내용

□ **(개선배경)** 고가차량*과 교통사고시, 저가차량은 피해자(과실비율 50% 미만)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,

*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% 이상이면서 고급·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(8천만원)을 초과하는 차량

○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.

□ **(개선내용)**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,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함으로써

○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「자동차보험 할증체계」를 개선하였습니다.

< 할증체계(사고내용) 개선 전·후 비교 >

□ **사고내용 : 고가차 과실 90%, 손해액 1.0억원 ⇨ 배상액 180만원**(200만원×90%)
저가차 과실 10%, 손해액 200만원 ⇨ 배상액 1,000만원(1.0억원×10%)

구분	현행	개선
고가 가해차량주1)	할증 ×	할증○
저가 피해차량	할증○주2)	할증 ×

주1)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정
주2) 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(과실비율 50% 미만) 1건은 할증 제외

1 추진 배경

□ 최근 **고가차량의 증가***로 실생활에서 **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****도 **급증**하였는바,

* (**'18년**) 28.1만대 → (**'20년**) 32.6만대 → (**'22년**) 55.4만대
** (**'18년**) 3.6천건 → (**'20년**) 3.5천건 → (**'22년**) 5.0천건

○ **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**은 **과실이 적은 피해자**임에도 결과적으로는 **더 높은 수리비용**을 **부담***하는 경우가 **증가**하였습니다.

* '22년 기준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.1백만원으로 非고가차 1.3백만원의 약 3.2배

□ 한편, 현행 「**자동차보험 할증체계**(대물피해)*」는 **상대방**에게 **배상**한 **피해금액**을 **기준**으로 **적용**함에 따라,

* 자동차사고 발생시 배상금액이 할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험료를 할증하고, 할증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할증을 유예

○ **높은 수리비용**을 **부담**한 **피해차량**은 **할증**되는 반면, **고가차량**은 **사고원인 제공**으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했음에도 **할증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***이 **제기**되었습니다.

* 현재도 저과실사고 1건을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'저과실 유예사고 제도'를 시행('17.9월)하고 있으나,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 가해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은 미비

※ **국회**(정기국감('21.10월))와 **감사원**(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('21.6월))은 금융감독원에 고가차량의 수리비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**개선방안 마련**을 **요구**

<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 사례 >

할증 체계	할증유예 (사고당 0.5점)	이하	물적할증기준 (50~200만원 中 선택)	초과	1등급 할증 (사고당 1점)

구 분	고가차	저가차
손해액	1.0억원	200만원
과실비율	90%	10%
배상책임금액	180만원(=200만원×90%)	1,000만원(=1.0억원×10%)
보험료 할증여부 (할증기준 200만원 가정)	할증×	할증○

□ 이에 따라, 금융감독원은 **고가 가해차량**이 **야기한 높은 수리비용**이 **저가 피해차량**의 **보험료 부담**으로 **전가되지 않도록** 「**자동차보험 할증체계**」를 **개선**하였습니다.

2 개선 방안

◈ 쌍방과실 사고시 **고가 가해차량**에 대해 **할증**하고, 사고 상대방인 **저가 피해차량**에 대해서는 **할증**을 **유예**

○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**높은 수리비용**을 **야기한 고가 가해차량**에 대해 **보험료**를 **할증**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(앞의 예) >

구분	현행	개선
고가 가해차량 (과실비율 90%, 배상액 180만원)	**할증 X**	**할증**
저가 피해차량 (과실비율 10%, 배상액 1,000만원)	**할증**	**할증 X**

주1)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 가정
주2) 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(과실비율 50% 미만) 1건은 할증 제외

□ **(적용대상)**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

○ ❶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, ❷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.

□ **(적용방법)**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**별도점수**를 **신설**하여 **보험료 할증**에 **반영**합니다.

○ **(고가 가해차량 할증)**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(1점)를 가산하여 **보험료**를 **할증**합니다.

○ **(저가 피해차량 할증 유예)**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(0.5점)만 적용하여 **보험료 할증**을 **유예**합니다.

< 할인·할증제도 개선 전·후 비교 >

□ **사고내용** : **고가차 과실 90%, 손해액 1.0억원** ⇨ **배상액 180만원**(200만원×90%)
저가차 과실 10%, 손해액 200만원 ⇨ **배상액 1,000만원**(1.0억원×10%)

구분	현행	개선	비고
고가 가해차량	**0.5점**	**1.5점**	**1등급 할증**
- 사고점수	0.5점	0.5점	
- **별도점수**	-	**1.0점**	
저가 피해차량	**1.0점**	**0.5점**	**할증유예**
- 사고점수	1.0점	-	
- **별도점수**	-	**0.5점**	

주1)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정
주2) 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(과실비율 50% 미만) 1건은 할증 제외

3 기대효과

1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

○ **자동차사고**의 **원인**을 **직접 제공**한 **고가 가해차량**에 대해 **할증점수**를 **부과**하는 등 **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**가 **마련**됨에 따라,

- 가·피해차량간 **보험료 부담의 형평성** 및 **자동차보험 제도**에 대한 **대국민 신뢰도**가 **제고**될 것으로 **기대**하고 있습니다.

2 자동차운전시 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

○ 신설된 '대물사고 별도점수'는 **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**에 대한 **패널티**로 **작용**하는바,

- 이미 적용 중인 할인·할증제도와 함께 **고가·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**을 **고취**하고, **자동차사고 발생예방** 및 관련 **피해 감소**에 **기여**할 것으로 **기대**하고 있습니다.

4 시행시기

□ 개선된 「**자동차보험 할증체계**」는 **'23.7.1일**부터 **발생**하는 **자동차사고**에 **적용**됩니다.

	Mr.파인
※ (**동영상 보도자료**) "**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**"을 쉽게 설명해주는 '미스터(Mr.) 파인'은 금융감독원 공식 SNS **유튜브**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• 미스터(Mr.) 파인 https://youtu.be/1I9v6NPbhi8	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